

의안번호	2125579
의 퇴 인	권영세의원
회 답 일	2023. 12. 19.
추 계 번호	23D484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선거인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3억 1,300만원, 2026년 23억 6,4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총 46억 7,700만원(연평균 9억 3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사전투표관리관의 선거인 신분증명서 진위 여부 판별(안 제158조제3항)	2,313	2,364	—	—	—	4,677	935

주: 1. 사전투표관리관의 선거인 신분증명서 진위 여부 판별(안 제158조제3항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 2.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고 2025년부터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전까지 총 14,258대를 구매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8조제3항(사전투표관리관의 선거인 신분증명서 진위 여부 판별)	사전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58조제3항(사전투표관리관의 선거인 신분증명서 진위 여부 판별)	0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‘신분증 스캐너’를 사용하여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 스캐너는 2년에 걸쳐 구매 완료하여 추계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
 - 유사사례로 금융기관에서 신분증 진위 확인 기능을 갖춘 신분증 스캐너 구매 입찰공고(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)를 활용
-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 예상
- 본 추계에서는 2025년부터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전까지 총 14,248대의 신분증 스캐너를 구매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
 -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, 2022년 대통령선거 시 사전투표소 수는 3,562개소가 설치되었고, 선거인명부 등재 확인 등을 위한 명부단말기 등이 사전투표소 1개소 당 4대씩 배치
 - 이에 개정안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용할 신분증 스캐너도 사전투표소 1개소 당 4대로 가정하면 총 14,248대(=3,562개소×4대)
 - 조달청의 나라장터 검색결과, 신분증 스캐너 1대당 단가는 2022년 기준 30만원¹⁾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3억 1,300만원, 2026년 23억 6,4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총 46억 7,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2] 사전투표관리관의 신분증 스캐너 사용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신분증 스캐너 수량(A, 대)	7,124	7,124	—	—	—	14,248
1대당 단가(B, 만원)	32	33	—	—	—	—
추가재정소요(=A×B, 백만원)	2,313	2,364	—	—	—	4,677

1) 2022년 '기업은행 노후 업무용 스캐너 교체(신분증 스캐너)'의 입찰공고를 살펴보면, 300개 구입에 8,903만원(부가세 10% 포함)으로 신분증 스캐너 1대당 가격은 30만원으로 추정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여 선거인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오명희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